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26 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서영교・박희승・임오경

이해식 · 강유정 · 한정애

이성윤 • 박홍배 • 박해철

이강일 • 박균택 • 윤준병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구(수갑, 포승, 보호대, 가스총, 전자충격기)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, 공무직인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,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. 이로 인해 무도실무관이 살인, 성폭력 등 범죄이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들을 상대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.

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데,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.

이에 최소한의 방어용 보호장구로서 전자감독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, 스스로의 신변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(안 제46조의2제2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보호관찰관)"을 "(보호관찰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계호 업무 보조 등을 위한 무도실무관을 둔다.

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호관찰소 소속 무도실무관은 정당한 직무 집행 시 보호관찰 대상자가 무도실무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6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삼단봉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 <u>(보호관찰관)</u> ① · ② (생	제16조 <u>(보호관찰관 등)</u> ① · ②		
략)	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③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		
	의 보호 및 계호 업무 보조 등		
	을 위한 무도실무관을 둔다.		
제46조의2(보호장구의 사용) ①	제46조의2(보호장구의 사용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보호관찰소 소속 무도실무		
	관은 정당한 직무 집행 시 보		
	호관찰 대상자가 무도실무관		
	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		
	우려가 큰 때 삼단봉을 사용할		
	<u>수 있다.</u>		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<u>③</u> ·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		
	과 같음)		
제46조의3(보호장구의 종류 및	제46조의3(보호장구의 종류 및		
사용요건) ① 보호장구의 종류	사용요건) ①		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6. 삼단봉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